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3일, 김원이 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3. 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원이 의원)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김산업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김 종자 생산업의 진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김 및 김산업 육성의 직접적인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현행법이 김, 김가공품 및 김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김이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수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약 26%, 202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김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판매를 아우르는 김산업 역시 지난 10년간 연 평균 14.2%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수산업에서 김과 김산업이 지니는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발의된 취지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김 종자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여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